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1년 3월 31일(목)까지 media@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

- (정의)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 제69조의2제1항)

$$\text{시청점유율} = \frac{\text{특정 TV채널 시청시간}}{\text{시청자의 전체TV 방송시청시간}}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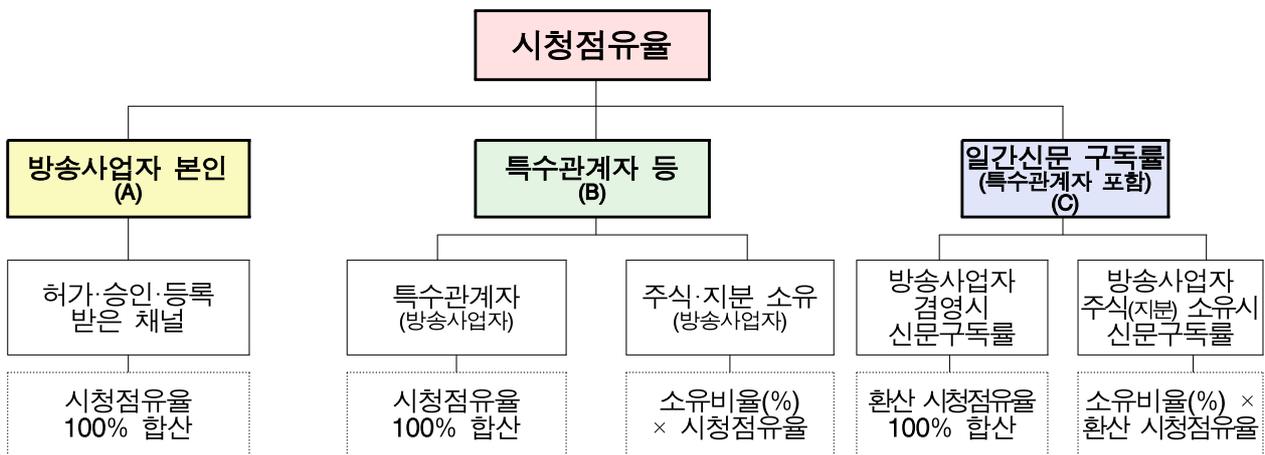
- (시청점유율 산정)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
- (심사반영)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재허가 (재승인)시 시청점유율을 심사에 반영
- (사후규제)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양도 등의 시정조치 가능
- (자료제출) 방송법 제98조제3항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의거 매년 3월 31일까지 주주구성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

2.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 산정 기준

- 시청점유율은 (1) 방송사업자 본인, (2) 특수관계자, (3)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 (4)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합산

<시청점유율 산정 체계>



□ 합산 반영비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 (일간신문의 구독률) 겸영하는 경우 환산된 시청점유율을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시청점유율 조사

-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기관이 시청점유율을 조사

3. 자료 작성 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2011년 3월 31일(목) 18:00
- (제출방법) 전자메일(media@kcc.go.kr) 접수
- (제출내용) 공문(Hwp, Word, PDF 등), 붙임 양식(Excel)
- (작성문의) 시청점유율 산정관련 자료작성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media@kcc.go.kr)로 문의

※ 전자메일로 수신된 문의내용에 대해 전자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

- 담 당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추진단 미디어기반정책과
김성환 사무관(02-750-1361)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① 제출공문
- ②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현황<양식 1>
- ③ 주주구성 현황<양식 2>
- ④ 특수관계자 현황<양식 3>
- ⑤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양식 4>
- ⑥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관련 현황<양식 5>

① 제출공문

- 방송사업자별 자체 문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방송사업자 대표이사의 직인 등이 날인될 수 있도록 하며,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공문에 기재

②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등록 현황(양식 1)

- (방송사업자명)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명(채널명, 지상파의 경우 연주소)을 기재(2010. 12. 31. 기준)
 -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괄호안에 채널번호 기재
- (유형) 해당 텔레비전 채널의 유형을 기재
 - 지상파TV, PP, SO, 위성, 지상파DMB, 위성DMB 등
- (방송개시일자) 2010년도에 해당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방송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방송개시 일자를 기재
 - ※ 2010년도 이전부터 방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미기재

<양식 1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현황 작성 예시>

방송사업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방송개시일자
(주)대한민국방송	대한TV방송국	지상파TV	-
(주)대한민국방송	대한스포츠방송	PP	-
(주)고구려방송	지역채널(채널번호 5)	SO	-
(주)고구려방송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12)	SO	2010. 5. 1.

③ 주주구성 현황(양식 2)

- (방송사업자명)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 ※ 구성주주 앞에 모두 기재
- (구성주주) 해당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기재(2010. 12. 31. 기준)
 - ※ 지분율이 높은순으로 기재

- (구성주주 법인등록번호) 구성주주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 500101-1xxxxxx)
 -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번호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 (대표자) 구성주주의 대표자명을 기재(개인인 경우 미기재)
- (출자금액)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구성주주가 출자한 금액(원단위)
- (지분율) 해당 구성주주의 출자금액 비율($\text{출자금액} \div \text{총출자금액} \times 100$)
-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구성주주의 최대주주의 법인명을 기재(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명칭),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기재(2010. 12. 31. 기준)
 - ※ 구성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미기재
-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법인등록번호)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 500101-1xxxxxx)
- (최대주주 대표자)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대표자명을 기재(개인인 경우 미기재)

<양식 2 주주구성 현황 작성 예시>

방송사업자명	구성주주	구성주주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출자금액 (단위:원)	지분율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최대주주 대표자
(주)고구려방송	(주)신라	110111-1234567	김길동	300,000,000	30.0	(주)갑을	110111-1111234	이길동
(주)고구려방송	가나다	500101-1xxxxxx		200,000,000	20.0			
(주)고구려방송	(주)고려	110111-2234567	김대한	200,000,000	20.0	(주)병정	110111-2221234	이대한
(주)고구려방송	(주)백제	110111-3234567	김민국	100,000,000	10.0	(주)갑병	110111-3221234	이민국
(주)고구려방송	가나라	510103-2xxxxxx		100,000,000	10.0			
(주)고구려방송	가나마	520102-1xxxxxx		100,000,000	10.0			
합계				1,000,000,000	100.0			

④ 특수관계자 현황(양식 3)

- (방송사업자명)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 ※ 특수관계자명 앞에 모두 기재
- (특수관계자명)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따른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명을 기재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텔레비전 방송국을 가진 경우에 한함
 - ※ 방송사업자가 아니거나 라디오방송 등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외
-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명(채널명, 지상파의 경우 연주소)을 기재(2010. 12. 31. 기준)
 -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괄호안에 채널번호 기재
- (유형) 해당 텔레비전 채널의 유형을 기재
 - 지상파TV, PP, SO, 위성, 지상파DMB, 위성DMB 등
- (특수관계내용)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정한 특수관계 내용(배우자, 임원, 계열회사, 30%이상 출자 등)을 기재

<양식 3 특수관계자 현황 예시>

방송사업자명	특수관계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특수관계내용
(주)고구려방송	(주)신라홈쇼핑	신라홈쇼핑	PP	계열회사
(주)고구려방송	(주)고려미디어	고려영화채널	PP	30% 출자
(주)고구려방송	(주)고려미디어	고려음악채널	PP	30% 출자
(주)고구려방송	(주)백제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채널번호 5)	SO	계열회사
(주)고구려방송	(주)백제종합유선방송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12)	SO	계열회사

⑤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양식 4)

- (방송사업자명)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 ※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앞에 모두 기재
- (지분소유 방송사업자명) 해당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
 - 지분을 소유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텔레비전 방송국을 가진 경우에 한함
 - ※ 방송사업자가 아니거나 라디오방송 등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외
-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 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명(채널명, 지상파의 경우 연주소)을 기재(2010. 12. 31. 기준)
 -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괄호안에 채널번호 기재
- (유형) 해당 텔레비전 채널의 유형을 기재
 - 지상파TV, PP, SO, 위성, 지상파DMB, 위성DMB 등
- (출자금액) 해당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 출자한 금액(원단위)
- (지분율) 다른 방송사업자에 출자한 금액이 다른 방송사업자 총출자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

<양식 4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 예시>

방송사업자명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출자금액 (단위:원)	지분율
(주)고구려방송	(주)신라홈쇼핑	신라홈쇼핑	PP	100,000,000	10.0
(주)고구려방송	(주)고려미디어	고려영화채널	PP	50,000,000	3.0
(주)고구려방송	(주)고려미디어	고려음악채널	PP	50,000,000	3.0
(주)고구려방송	(주)백재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채널번호 5)	SO	50,000,000	1.0
(주)고구려방송	(주)백재종합유선방송	직접사용채널(채널번호 12)	SO	50,000,000	1.0

⑥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관련 현황(양식 5)

- (방송사업자명)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기재(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
 -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명 앞에 모두 기재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명 기재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명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해당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명 기재
- (출자금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해당 방송사업자에 출자한 금액(원단위)
- (지분율)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해당 방송사업자에 출자한 금액이 해당 방송사업자 총출자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
- (연평균유료구독가구수) 해당 일간신문의 2010년 연평균유료구독가구수 기재
 - 연평균유료구독가구수의 경우, 한국ABC협회의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
 - ※ 인증서의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제출 가능(인증서 스캔, email 제출)

<양식 5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관련 현황 예시>

방송사업자명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 포함)	출자금액 (단위:원)	지분율	연평균유료구독가구수 (2010년)
(주)고구려방송	(주)고구려일보	100,000,000	5.0	300,000
(주)고구려방송	김유신(㈜신라일보)	50,000,000	3.0	100,000

-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

⑦ 기타 유의사항

- 동 자료는 방송사업자(법인) 기준으로 작성
- 양식 3(특수관계자 현황), 양식4(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 양식5(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관련 현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4. 방송법 등 관련 조항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붙 임 : 1. 방송법 등 관련 조항
2. 작성양식

방송법 등 관련 조항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p>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98조(자료제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청점유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에 대한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것. 다만,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방송사업의 허가·승인 등의 심사 반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을 산정한다. 2.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p>②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비율을 곱하여 반영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에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반영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다)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직전년도 총가구수 중 특정 일간신문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산정되는 비율의 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 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제8조(매체교환율) 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

②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

③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

⑤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제9조(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제12조(자료제출) ①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구성 현황

2. 특수관계자 현황

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4. 주주 변동 내역

- 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청점유율 산정의 특례) ① 제8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2010년에 공표한 매체교환율을 이용한다.
- ②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을 지정하기 이전의 시청률의 합은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 ③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정하는 시청점유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한다.